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　　호

이 조례(안)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장 임명권자를 변경하고, 통 명칭과 구역 조정권자를 변경 등으로 효율적인 통·반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조항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서 **제7조제5항으로 개정(제1조)**

○ 통의 명칭과 구역의 지정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제3조)**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제4조~제6조 각각 삭제**(제4조~제6조)**

○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 및 이용 금지 조항 신설(제7조의2)**

○ 시행세칙에서 **시행규칙 제정으로 개정(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 3396-4566, FAX : 3396-8612, E-mail : junyoomi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2제5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7조제5항 ---------- ---------- ---------- ----------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
제4조(통장의 임기)	<삭제>
제4조의2(반장의 임기)	<삭제>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⑤ (생략)	<삭제>
제5조의2(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⑤ (생략)	<삭제>
제6조(명예반장) ① ~ ② (생략)	<삭제>
<신설>	제7조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규칙으로 -------.